특허 Q&A

Q. 출원인이 제출한 보정서 및 의견제출서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반드시 고려됩니까?

A.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이를 참조하여 심사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표시해야 합니다. 단,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보고서의 작성 개시 이후에 보정서 또는 의견제출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국제예비심사보고서에 고려되지 않습니다.

Q. 국제단계에서 국제특허출원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번역문 제출기간 및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?

A. 국제단계에서 특허협력조약 제19조 및 34조의 보정이 이루어진 경우 출원인은 기준일까지 보정서 번역문을 제출해야 하며 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35호 서식 "서류 제출서"로 제출하여야 합니다.

※ 기준일이라 함은 국내서면 제출 기간 만료일이며, 국내단계진입기한 이전에 국내단계절차를 진행하고 심사청구한 경우 그 청구일을 의미합니다.

출처 특허청 홈페이지